

## 제 안 설명서

[영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(안)]

영 주 시

## 영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(안)

의 안 번 호	/ 3 /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0년 0 월 일  
제 출 자 : 영 주 시 장

### 1. 폐지이유

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 (2000.1.28 법률제6236호, 시행 2000.7.29) 되면서 종전에 동법 제37조의3에서 규정하던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“영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”를 폐지함.

### 3. 폐지조례(안) : 덧붙임

### 4. 참고자료 : 덧붙임

- 관련법령(발췌) 1부

## 영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(안)

영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법령(발췌)

【부동산증개업법】

종 전	현 행 (개정 2000.1.28)
<p><u>제 37조의3(증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증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·처리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소속하에 증개업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<u>②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증개업자와 증개의뢰인, 증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·조정한다.</u></p> <p><u>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관련분야를 전공한 자</li> <li>2. 판사·검사·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</li> <li>3. 시·군 또는 구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증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</li> <li>4. 부동산증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li> </ol>	<p><u>제 37조의3(수수료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</li> <li>2.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</li> <li>3.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증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</li> <li>4.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[전문개정 2000.1.28]</p>

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7조의4(조정의 절차등) ①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·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

<삭제 2000.1.28>

정거부사유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 내지 제5항외에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제 37조의5(조정의 처리) ① 위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서가 작성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보증등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당사자는 이 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과는 별도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<삭제 2000.1.28>

## 의안 검토 보고서

### 1. 의안

- 의안번호 : 제131호
- 의안명 : 영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(안)
- 해당부서 :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

### 2. 제안이유

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 (2000. 1. 28 법률제6236호, 시행 2000. 7. 29) 되면서 종전에 동법 제37조의3에서 규정하던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골자

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“영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”를 폐지함.

### 4. 검토의견

- 영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
·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(2000. 1. 28 법률제6236호, 시행 2000. 7. 29) 되면서 종전에 동법제37조의3에서 규정하던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내용임.
- 본 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  
·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에서 규정하던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2000. 9.  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